

의안  
번호

4550

「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」 일부 개정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경 제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류 옥 화

의안 번호	4550
----------	------

## 의안검토보고서

- 발의 또는 제출자: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- 건명: 「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」 일부 개정 동의안
- 안전요지: 별첨
- 검토의견: 별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26년 3월 20일

경제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류옥화



# 「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」 일부 개정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약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
-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에 관한 사무의 사업대상지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
-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선임방법에 관한 규약 내용을 개정하여,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규약」 제1조(목적) 및 제19조(조합의 해산)에 인용된 상위 법령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
- 나. 「규약」 제5조(조합의 사무 등) 사업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
- 다. 「규약」 제12조(조합장) 조합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

### 3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해 설립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- 주요 내용으로 제1조(목적) 및 제19조(조합의 해산)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약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
- 제5조(조합의 사무 등) 사업대상 지역을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에 관한 사무의 사업대상지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합 사업 운영의 기준을 정립하고, 조합원이 별도의 수거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이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
- 제12조(조합장)의 선임방법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선임방법에 관한 규약 내용을 개정하여,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.
- 관련 규약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구 분		현 행	개정안
제1조 (목적)	설립근거	·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	·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
제5조 (조합의 사무 등)	사업대상 지 역	· 조합원의 행정구역	· 조합원의 행정구역 (단, 조합원이 별도 수거체계를 마련 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)
제12조 (조합장)	선 임 방 법	·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 집하여 선발한다. (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선발 채용일 전까지는 현행 선임방법에 따른다.)	· 조합장은 동구, 대덕구, 중구, 유성구,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 · 조합회의 의결에 따라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다.
	임 기 등	·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, 채용 시기, 임금 등은 ‘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’으로 정한다.	· (자치구 공무원 선임의 경우) 2년 / 단, 공무원 추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파견기간을 고려하여 조합장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 서 달리 정할 수 있다. · (경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의 경우) 「조합장 인사관리 규정」에 따름
제19조 (조합의 해산)	해산근거	· 「지방자치법」 제164조	· 「지방자치법」 제181조

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76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**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
**제181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.